

전라북도 공고 제2019 - 296호

2019년도 전라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9년도 전라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전라북도지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등

1. 선발예정인원

구분	채용계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 과 목	필기시험 시 간	
			계	남성	여성			
합 계			327	294	33			
공개 경쟁 채용	지방소방사	화재진압	205	190	15	-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5과목 (100분) 10:00~11:40	
경력 경쟁 채용	지방소방사	소방전공학과	25	20	5	- 필수(3):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3과목 (60분) 10:00~11:00	
		응급구조학과	17	12	5			
		구 급	36	28	8			
		구 조	일반	37	37	-		- 필수(3):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화학 구조	3	3	-		
	차량정비	2	2	-				
지방소방교	운항관리	2	2	-	- 필수(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2. 필기시험 출제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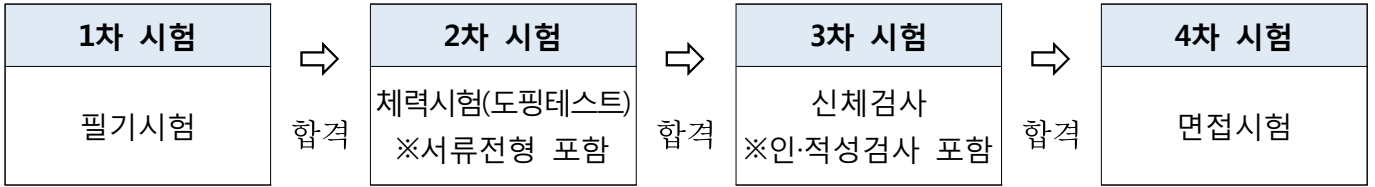
과 목	구 분	내 용
소방학개론	공통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소방관계법규	공개경쟁채용	「소방공무원임용령」제44조 관련 [별표3] 가.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경력경쟁채용	「소방공무원임용령」제44조 관련 [별표5] 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사회	공개경쟁채용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학		수학 I, 수학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생활영어	경력경쟁채용 (지방소방사)	「소방공무원임용령」제44조 관련 [별표5] - 지방소방사로 경력경쟁채용을 하는 경우 필수과목 중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2 시 험 일 정

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방법	장소공고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	
`19. 3. 11.(월) 09:00 ~ `19. 3. 14.(목) 21:00 [기간 중 24시간] ※ 취소기간 `19. 3. 11.(월) 09:00 ~ 3. 18.(월) 21:00 * 토요일, 일요일 제외	제1차시험	필기시험	3. 22.(금)	4. 6.(토)	5. 10.(금)	
	제2차시험	체력시험 (서류전형)	5. 10.(금)	5. 20.(월) ~ 5. 24.(금)	5. 27.(월)	
	제3차시험	신체검사	5. 27.(월)	5. 28.(화) ~ 5. 31.(금)		6. 12.(수)
		인·적성검사		6. 3.(월)		
제4차시험	면접시험	6. 12.(수)	6. 17.(월) ~ 6. 20.(목)	6. 24.(월)		

※ 각 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도정정보 - 시험·채용 - 시험안내 또는 시험·채용공고 또는 합격자발표」 란에 공고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수시 확인 요함)

3 시험 방법



※ 전(前)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서류전형에 한하여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할 수 있음

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1)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2항)

채용 분야	화재진압	소방전공학과, 구조, 구급, 응급구조학과	화학구조, 차량정비, 운항관리
필기합격인원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처리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적용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 관련 [별표7] 참조 **붙임2**

2) 필기시험문제 등 공개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사이트(<http://119gosi.kr>)

문제공개	이의제기 기간	최종 확정답안 통보
2019. 4. 6.(토) 시험종료 후	2019. 4. 6.(토) 11:40 ~ 4. 7.(일) 24:00	2019. 4. 11.(목)까지
공개내용 : 문제지 및 가답안 공개	신청방법 : 붙임3	공고장소 : 전라북도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사이트 등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및 도핑테스트 (서류전형 포함)

1)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7] 참조 **붙임4**
- 종목별 측정방법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4] 참조 **붙임5**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총점의 50%(60점 중 3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2) 도핑테스트

- 도핑테스트는 체력시험 응시자의 5~10% 범위에서 대상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함
- 도핑테스트 안내문 **붙임6** 참조
-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붙임7** 참조

- 치료목적으로 인한 금지약물의 복용의 인정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 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는 **[붙임8]** 참조
- 도핑테스트는 시험의 단계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는 임용령 제37조 제3항을 적용받지 아니함
 -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도핑테스트 결과 금지약물복용이 적발 된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임용령 제4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 ※ 서류전형
 - 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체력시험 종료 후 제출(체력시험 공고 시 병행 공고)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인·적성 검사 포함)

- 신체검사 방법 : 신체검사는 중앙소방학교장이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시험실시기관에 제출(수수료 응시자 부담)
 - ※ 중앙소방학교장이 지정한 종합병원 등 세부내용 :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예정
- 신체검사 결과는 전산에 의해 기록되어야 하며, 수기로 작성한 신체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붙임9]**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함
 -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7항 관련 [별표5] 참조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불합격 판정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관련 [별표3] 참조 **[붙임10]**
- ※ 색각에 이상이 있는 응시자는 종합병원에서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신체검사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 ※ 인·적성 검사
 - 인·적성검사는 대리시험 방지를 위하여 집합검사로 실시(신체검사 공고 시 병행 공고)
 - 인·적성검사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사전 제공되어, 면접의 평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1) 면접시험

- 면접시험 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 규정에 의함
- 합격자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2) 면접시험 평가요소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마.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실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총득점에 의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 인원내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3 응 시 자 격

※ 응시요건 등의 기준

적용분야	종 류	보유 기준일
공 통	운전면허	필기시험일
공개경쟁채용	가산점 관련 자격증	필기시험일 전일
경력경쟁채용	자격·면허 등 응시요건	필기시험일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등 기간 산정	면접시험 최종일

※ 자격·면허(운전면허 포함)는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해서 유효해야 함

가. 응시결격사유 ※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10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및 제51조,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9. 4. 16.까지 적용]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9. 4. 17.부터 개정 시행]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공공기관 등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 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나. 성 별 : 남·여 구분모집

다. 응시연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별표2]

구 분	직 급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공개경쟁	지방소방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8. 1. 1. ~ 2001. 12. 31.
경력경쟁	지방소방사 지방소방교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8. 1. 1. ~ 1999. 12. 31.

※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조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라. 거주지 제한(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공개경쟁분야만 해당, 경력경쟁분야는 거주지 제한없음

- ①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2019년 1월 1일은 포함하지 않음)
- ②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2019년 1월 1일은 포함하지 않음)

※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마. 자격(면허)·경력 제한

○ 공통사항(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채용)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

○ 경력경쟁채용시험 자격(면허)·경력 제한

선발분야	채용계급	응시자격						
소방 전공 학과	지방 소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휴학, 자퇴 포함)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2~3년제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은 해당 없음) * 45학점 기준 : 성적증명서에 전공선택, 전공필수 표기된 것 ※ 유사한 학과는 소방관련 과목이 전공과목의 1/2이상인 학과를 말하며, 붙임11 학교 총장이 발행한 동일학과계통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붙임12-1,2 						
응급 구조 학과	지방 소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고 1급 응급구조사자격증 소지자 ※ 원서접수 최종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유효하여야 함 						
구급	지방 소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 붙임13 참조 						
구조	지방 소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td> <td>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CCT)</td> </tr> <tr> <td>② 특수임무대 (국방부)</td> <td>정보사, 특공연대(여단), 수방사 35특공대대, 해병특수수색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24특임대대, 헌병특수임무대</td> </tr> <tr> <td>③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td> <td>"경력증명서(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 사령관 발급)"와 "특수전임무수행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원 제출</td> </tr> </table>	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CCT)	② 특수임무대 (국방부)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수방사 35특공대대, 해병특수수색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24특임대대, 헌병특수임무대	③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 사령관 발급)"와 "특수전임무수행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원 제출
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CCT)							
② 특수임무대 (국방부)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수방사 35특공대대, 해병특수수색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24특임대대, 헌병특수임무대							
③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 사령관 발급)"와 "특수전임무수행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원 제출							
화학구조	지방 소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1~2번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1. 군 화학병과 또는 화학주특기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2.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유사한 학과는 소방관련 과목이 전공과목의 1/2이상인 학과를 말하며, 붙임11 학교 총장이 발행한 동일학과계통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붙임12-1,2 						
차량정비	지방 소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아래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아래의 1~3번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1. 소방차량(펌프차, 고가·굴절사다리차 등) 및 특장차량 제조 정비업체 2.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및 소형자동차 정비업체(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업무 제외) 3. 군복무 기간 중 수송부대에서 차량정비 담당업무 						
운항관리	지방 소방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법」에 의한 운항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운항관리 또는 항공관제 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 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함

바. 자격(면허)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1) 경력이라 함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주 40시간에 준함)**한 경력을 말함
- 3) 비상근 또는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예) 비상근 또는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 → 2년 인정
- 3) 근무경력이라 함은 단지 해당경력과 관련된 기관·업종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實)근무경력**을 의미함. 즉 육아휴직·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응시요건 기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함
※ 단, 구조분야의 근무 중 입원기간(공상포함)은 10%의 범위도 불인정
- 4) 근무경력(기간)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은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의 근무경력에 한해 인정함
- 5)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 월, 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하여 계산

- 가) 역에 의한 계산 방법(「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 기간을 주(週),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함
 - 주(週), 월(月)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의 기간을 기산(起算日)에 해당한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함
 -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月)의 말일(末日)로 기간이 만료함
- 나) 월(月), 연(年) 단위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복수의 간헐적 경력기간의 합산
- 연(年) 단위는 경력 계산에서 역(曆)에 의한 계산이 곤란할 경우 각각의 경력을 일(日) 단위로 환산한 다음 1년(365日)으로 나누어서 경력을 계산
 - 월 단위의 경력 계산의 경우 연단위의 계산을 공제한 뒤 남은 일수를 1개월(30日)로 계산

- 6)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붙임14**
 - 4대보험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 ※ 업체의 폐업 등으로 관련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근무경력사실 확인서」 **붙임15** 제출
 - ※ 서류전형 세부사항은 체력시험 공고 시 안내
- 7)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 8)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특수부대요원의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 발급)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군 경력증명서(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를 제출해야 함**
- 9) 시험에 관한 제출·증빙서류에 거짓·위조·변조 등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응시자는 서류제출 전 기재내용이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 수 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http://local.gosi.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 원서접수센터(☎1522-0660)로 문의
- 나. 접수기간 : 2019. 3. 11.(월) 09:00 ~ 3. 14.(목) 21:00 [기간 중 24시간]
- 다. 취소기간 : 2019. 3. 11.(월) 09:00 ~ 3. 18(월) 21:00 * 토요일, 일요일 제외

라.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교·소방사 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응시원서 접수 시 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마감 후 자격 확인 및 환불)

마. 응시원서 사진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반드시 귀가 나오도록 하여야 함(스냅사진 등록 불가)
-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3.5cm × 4.5cm기준, 해상도는 100dpi 이상
- 응시원서 등록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 등에 활용되므로 사진 등록 후 본인 사진 여부 및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
- 사진 식별불능 및 등록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응시원서 등록사진은 최종합격 후 동일 사진이 추가 필요하므로 원판보유 사진으로 등록 후 보관하여야 함

바.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 불가함
 - ※ 단, 가산특전과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수정 가능
 - ※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운전면허 취득 예정자는 원서접수 시 “취득예정” 선택
- 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 시 응시 수수료 환불(인터넷 취소만 가능)
- 응시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응시표 출력 기간에 출력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함
-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자격증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6 가 산 특 전

※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당해 필기시험 전일 기준)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의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최대 5%까지만 적용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자격증 등 소지자	자격증 (면허증)	과목별 만점의 1% ~ 5%	
	사무관리	과목별 만점의 1% ~ 3%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시험단계별로 각 과목별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과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직접 확인해야 함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함
 - 단,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보건복지부(☎ 044-202-3258) 등에 직접 확인해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 필기시험에 한함)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자격증 등 소지자는 필기시험 때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 ~ 5%를 가산함
-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4조 관련 [별표6] 참조 **붙임17**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또는 유효한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 [2019. 4. 5.(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해야 함
 - * OMR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 없음
 -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5%, 3%)과 보훈번호·의사상자 증서번호 입력
 -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증서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산특전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하여는 '가'와 '나'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함

7 기타 유의사항

-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실 입실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답안작성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만을 사용
-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장에서는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및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는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 시험 문제지 및 답안은 시험 종료 후 공개합니다.
- 사.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도핑테스트 비정상 분석 결과자 포함)를 하거나 거주지, 연령, 경력, 자격증, 가산점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로부터 향후 5년간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 등의 관련 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됩니다.
- 자. 응시희망자는 본 공고문과 「소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을 확인하여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전북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도정정보 - 시험·채용 정보란에 공고
-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팀(063-280-3841) 또는 전북도청 총무과 공무원채용팀(063-280-42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2) 소방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의 류별(제1류 ~ 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붙임2 **선택과목 특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text{응시자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div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 \times 10 + 50$$

비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 \text{의 총합계}}{\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붙임4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측정 시 소수점 이하 절사

※ 악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붙임5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정방법 등
<p>악력 (k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p>배근력 (k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 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최적으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p>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뺀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뺐혔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정방법 등
<p>제자리 멀리뛰기 (c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p>윗몸 일으키기 (회/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p>왕복오래 달리기 (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 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붙임6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등을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은 금지 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보관 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는 본시험의 시행기관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로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 받은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치료목적 사용면책 등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의 분석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 분석을 요청 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적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판단 되나, B시료의 분석결과 역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의 지정 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에 대해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붙임7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I. 금지약물

○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drostanolone ▶ methenolone
 -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 stanozolol
 -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 methylephedrine ▶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 Buprenorphine ▶ dextromoramide ▶ diamorphine(heroin)
- ▶ fentanyl 및 유도체 ▶ hydromorphone ▶ methadone
- ▶ morphine ▶ oxycodone ▶ oxymorphone
- ▶ pentazocine ▶ pethidine

II. 금지방법

○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붙임8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input type="checkbox"/> 응급 <input type="checkbox"/> 기간(주/월) _____
--------------------------------	--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전자

우편: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붙임9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앞쪽)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 진
(3cm×4cm)

※ 압인 또는 계인

수험번호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검 사 내 용

신장		cm		체중		kg	
시력		좌: 우:		혈압		청력	
	교정	좌:	우:	색신(색각)		정상	좌: 우:
		좌:	우:			교정	좌: 우:
안질환				이비인후질환			
치아				호흡기질환			
간질환				신경질환			
소화기질환				피부질환			
순환기질환				정신질환			
비뇨기질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검사				기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결과	<input type="checkbox"/> 합격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합격여부	<input type="checkbox"/> 불합격	
	<input type="checkbox"/> 판정보류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

전화번호(☎) :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1년

210mm×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의료기관]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2.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안에 √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3.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여야 합니다.

붙임10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합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총병(휘다리야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 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 분	내 용
12. 귀	가. <u>두 귀 중 하나 이상의 교정청력이 40dB 이상인 사람</u>
13. 눈	<p>가. <u>두 눈 중 하나 이상의 맨눈시력이 0.3 미만이고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교정시력이 0.8 미만인 경우</u></p> <p>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p> <p>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p> <p>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p> <p>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p>
14. 정신 계통	<p>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p> <p>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p> <p>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p> <p>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p> <p>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p>
15. 혈압	<p>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p> <p>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p>
16. 운동 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 신체검사 결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의 전일까지 나와야 함

붙임11 소방 관련 과목

분 야	과 목
사회과학분야 (12)	소방행정법, 소방정책론, 소방조직론, 소방인사론, 소방재정론, 비교소방론, 소방심리학, 소방홍보론, 재난관리론, 소방법규해설, 소방행정사, 소방학개론
실무분야 (10)	화재진압론, 구조론, 응급처치론, 소방장비론, 소방지휘론, 소방시범처리론, 소방검사론, 위험물시설론, 화재조사론, 소방행정실무
자연과학분야 (14)	연소폭발론, 화재현상론, 특수화재론, 소화약제학, 소방기계시스템설계개론,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건축소방학, 소방경보시스템공학, 소방전기설비공학, 소방정보통신론, 위험물질론, 소화설비론, 제연설비론, 소방학개론

비 고 : 1. 1학점 이상으로 편성된 과목

2. 2이상의 과목이 1개의 과목으로 통합편성된 경우 1과목으로 간주

3. 과목 명칭 및 내용이 위 과목과 유사한 경우 소방관련 과목으로 인정하되 그 판단은 중앙소방학교장이 한다.

붙임12-1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대학교용)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대학교	대학(학부)	학과	년도 졸업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시·도 공고문(201 . . ○○)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전화 : -)

201 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 날인)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12-2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대학원용)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대학교 년도 졸업	대학원	학과 전공

위 사람은 우리 대학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시·도 공고문(201 . . ○○)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전화 : -)

201 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 날인)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13

구급분야 종사경력 인정범위

(간호사)

-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1급 응급구조사)

-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행한 구급경력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안에서 현장, 이송 중 또는 의료기관안에서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한 경력

가. 의료법 제3조 각 항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마.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바.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사.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아.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업무로 근무한 경력(구체적 복무확인서 필요)

자. 군(軍), 해양경찰 등에서 의무병과 및 응급 분야에 근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 확인서 필요)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붙임14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경력증명서)

기관 현황	회사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생년월일		
경력사항	근무기관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예시)	근무 형태	
					2010.12.25. ~ 2012.12.22.		
	총 근무기간						
	징계사항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1		확 인 자 2	
성 명			
연락처			
서 명			

※ 2인의 확인자 필수

2019년 월 일

_____ 사 (직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을 참고하여 귀 사에 보유한 인사기록과 일치 여부를 우선 확인 후 작성
- 근무기관은 합병, 회사분할 등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기재
- 경력사항은 부서별로 경력기간을 표시하며, 대학교의 경우, 연구원 경력 강의(강사) 경력내용을 포함
- 총 근무기간은 일 단위까지 계산 (예: 10년 6개월 5일)
- 근무형태는 상근, 비상근, 시간제로 구분하고,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일수(시간) 표시
※ 상근 : 주 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 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 40시간미만 근무자
- 확인자는 작성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징계사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
- 소방공무원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문서 내용을 보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000과 (☎ ※ 검증 시 사용하는 별도 전화번호, 팩스번호 작성)
- **주의사항** : 확인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른 귀책사유에 따라
 관련기관 및 대상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5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본 사실 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근 무 경 력	사업체명	해산(폐업) 연도	직 위	재 직 기 간	담당업무
	(주)○○병원	2017	주 입	95.05.01. ~ 97.12.01. (2 년 8 월)	응급구조사

입증인(1)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입증인(2)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붙 임 : 폐업사실증명서 1부.

붙임16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가점비율 분야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자격증 (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3.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2.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4. 응급구조사(2급)
사무 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비고 :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붙임17**
- 자격증(면허증) 및 사무관리 분야를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붙임17

공개경쟁채용자의 가점 적용 자격(면허) 내역(총괄)

가점비율 분야	5%	3%	1%
① 자격증 (면허증)	소방관련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자동차정비, 화공, 위험물,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기기,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통신설비,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소방관련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 전기),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농작업안전보건, 방재,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기상, 기상감정,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소방관련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거푸집, 건축도장, 도배, 미장,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지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舊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설비보전, 농기계정비, 반도체장비유지보수,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조선,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항공,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차체수리,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3D프린터개발, 광학,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카드, 3D프린터운용,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통신기기,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 전기), 화재감식평가,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1급~4급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잠수기능장	5급 또는 6급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소방안전교육사	제1종 특수트레이러면허(대형견인차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의사, 변호사 소방시설관리사		응급구조사2급
②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자격종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참조